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84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1월 2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한 균형 있는 권한 배분과 함께 출자·출연기관의 위원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“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”을 “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”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함(안 제8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<u>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u></p> <p><삭 제>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<u>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u></p> <p>2. <u>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u></p> <p><삭 제></p> <p>② ~ ⑦ (<u>개정안과 같음</u>)</p>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1. 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 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u>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</u> 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. <u>그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</u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<삭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장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u> 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<p><삭제>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